

규정심의위원회  
의 결 서



# 규정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

(2020. 3. 16)

## ① 인사관리규정 개정(수정 의결)

- 부의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삭제
  - “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·인적성검사·논문심사·면접시험, 관리직의 경우 경력, 인적성검사, 필기시험, 특수자격(면허 등)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.”를 “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·논문발표심사·인적성검사·면접시험, 관리직의 경우 서류·필기시험·인적성검사·면접시험에 의하여 행한다.”로 변경
  - “인적성검사는 충청남도 통합채용 시행 이후부터 실시”는 삭제
-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에 대한 구체적 조문수정 및 신설
- 제6조(직원의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)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
  - 제1항 중 “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·논문심사·면접시험, 관리직의 경우 경력, 필기시험, 특수자격(면허 등)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.”를 “직원의 신규임용은 연구직의 경우 서류·논문발표심사·인적성검사·면접시험, 관리직의 경우 서류·필기시험·인적성검사·면접시험에 의하여 행한다.”로 변경
  - 제2항 중 제1호 “서류심사는 채용자격요건, 전공분야 경

력, 연구실적심사, 논문심사”를 “서류심사는 채용자격요건, 전공분야경력, 연구 및 논문 실적 심사”로 변경

- 제2항 중 제3호 “면접시험은 논문발표, 구술시험”을 “논문발표 심사”로 변경
- 제4항 “관리직에 관한 신규임용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변경

○ 제6조(직원의 신규임용 방법과 전형)의 조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

- 제2항 중 제4호 “인적성 검사”, 제5호 “면접시험”을 신설
- 제3항으로 “관리직 일반임용 공개경쟁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.”를 신설
- 제5항에 제1호 “서류심사”, 제2호 “필기시험”, 제3호 “인적성 검사”, 제4호 “면접시험”을 신설

## ② 임용시험규칙 개정(부결)

- 금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규칙개정이므로,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협의 후 추후 안건 재상정

## ③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(부결)

- 관리직 근무성적평정규칙을 포함하여 일괄 개정

## ④ 주40시간근무운영규칙 개정(수정 의결)

- 부의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변경

“모든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할 때에는 사전(사후)에 부서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, 주(월~일)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.”를 “모든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(월~일)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.”로 변경

“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원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원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원장은 7일 이내에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”로 변경

#### ○ 제4조(운영방법)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

- 제4조 제6항을 “제3조 제3항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전(사후)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를 신설

### ⑤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개정(원안 의결)

#### ○ 차후 부설조직운영규칙에 대한 심의 필요